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872
------------	------

2024년 6월 1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은림 의원 외 21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5월 27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라. 상정일자

○ 제324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년 6월 1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은림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대중교통 현황에 따르면, 전년 대비 지하철(8.93%), 시내버스(4.68%) 등의 이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이 6.12% 늘었지만, 마을버스만 2.39% 줄어 든 81만 3천명 수준으로 후퇴함
- 이러한 승객 감소는 마을버스 업체의 운영난과 인력난으로 연결되면서 마을버스 운행 중단과 배차간격의 증가,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가져와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함(안 제9조 제1항제1호)
- 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상담 및 조사 연구(안 제9조제1항제2호)
- 다.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안 제9조제1항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6. 4. ~ 2024. 6. 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sup>1)</sup>

○ 제출의견 : 보류

- 인건비 명목인 제1호 처우개선비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중복되므로 신설 어려움
  - 재정지원기준액 산정시 운수종사자 인건비 반영
  - 재정지원금은 인건비 항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이미 조례 제9조에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1) 버스정책과-20936호('24.6.10.)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업계의 운수종사자 유출을 방지하고 운송사업자의 고충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 시장 및 사업자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24년 3월 기준 서울시 마을버스는 140개 업체, 252개 노선, 1,564대 운행차량을 2,815명의 운수종사자가 운행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마을버스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운수종사자가 차량 1대당 2.2명임을 고려할 때 약 626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1년부터 운수종사자 부족인원<sup>2)</sup>이 크게 증가하여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배차시간이 늘어나는 등 승객 감소<sup>3)</sup> 및 이용 불편에 영향을 줌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실태

(서울시 내부자료, '24.3., 단위: 대, 명)

년도	운행대수	現 운수종사자수(A)	적정 운수종사자수(B)	부족인원(B-A)
2020	1,590	3,289	3,498	209
2021	1,590	2,981	3,498	517
2022	1,599	2,776	3,518	742
2023	1,599	2,797	3,518	721
2024	1,564	2,815	3,441	626

3)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서울시 내부자료, 단위:천명/일)

○ 마을버스의 정상적인 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마을버스 업계가 시내버스 업계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운수종사자의 급여<sup>4)</sup>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택배·배달 활성화 등으로 인해 운수종사자 채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또한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연령<sup>5)</sup>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약 42.9%로 서울시 전체 버스업계 운수회사 종사자 연령분포에 비해 고령운전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볼 때 마을버스 운수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대중교통	10,445	7,767	7,776	8,563	11,656	+36.12%
지하철	5,222	3,791	3,842	4,288	7,229	+68.59%
시내버스	4,053	3,125	3,121	3,439	3,610	+4.97%
마을버스	<b>1,170</b>	<b>851</b>	<b>813</b>	<b>836</b>	<b>817</b>	△2.27%

4) 시내·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월급여 비교 (’23년 기준 서울시 내부자료, 2년차, 단위:원)

구분	시내버스(①)	마을버스(②)	차액 (①-②)	비고
기본시급	11,828	9,620	2,208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약 81% 수준
월기본급	2,081,728	1,693,120	388,608	8시간×22일 (176시간)
주휴수당	378,492	307,840	70,652	8시간 × 4일
연장근로수당 (일단위)	390,324	317,460	72,864	1시간×1.5시간×22일
연장근로수당 (주단위)	177,420	567,580	△390,160	○ 시내: 월2회 5시간 근무(단축) ○ 마을: 월4회 9시간 근무(정상)
야간수당	325,270	139,100	186,170	○ 시내: 오전2, 오후3시간 적용 ○ 마을: 오전1, 오후2시간 적용
무사고포상금	210,000	-	210,000	마을버스는 없음
상여금	1,040,864	177,470	863,394	○ 시내: 기본급의 600%(연간) ○ 마을: 기본급의 200%(연간)
합계	4,604,098	3,202,570	<b>1,401,528</b>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의 약 70% 수준

5) 서울시 연령대별 버스회사 운수종사자 현황

연령대	서울시 전체 버스회사		서울시 마을버스	
	종사자수(명)	비율(%)	종사자수(명)	비율(%)
30세미만	232	1.0	97	3.4
30대	1,084	4.5	196	6.8
40대	3,956	16.3	267	9.3
50대	10,636	43.9	517	17.9
65세미만	4,877	20.1	570	19.8
65세이상	3,450	14.2	<b>1,235</b>	<b>42.9</b>
소계	24,235	100.0	2,882	100.0

※ 운수종사자 관리 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24.5월 기준

계 처우개선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6)에서 시·도는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개선,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9조7)에서 시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사업, 상담 및 조사 연구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현재 마을버스 업계 상황과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등을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서울시는 현행 조례8)에 따라 운송수익금이 재정지원기준액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6. <생략>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시장 및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④ 시장은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매년 초에 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에 미달하

미달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금에 운수종사자 인건비 등 처우 부분이 고려되고 있는 만큼 기존 지원금 이외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어느 정도 범위와 수준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동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원사업을 통해 운수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지 여부, 운수회사를 통해 운수종사자를 지원하는 경우 누수 방지 대책 등 실행가능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872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이은림,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유만희,  
이상욱, 이영실, 장태용,  
정준호, 최진혁, 허 훈,  
황유정 의원(22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가 최근 공개한 2023년도 대중교통 현황에 따르면, 전년대비 지하철(8.93%), 시내버스(4.68%) 등의 이용률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이 6.12% 늘었지만, 마을버스만 2.39% 줄어든 81만 3천명 수준으로 후퇴함.
- 이러한 승객 감소는 마을버스 업체의 운영난과 인력난으로 연결되면서 마을버스 운행 중단과 배차간격의 증가, 교통사고 등의 문제를 가져와 시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이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고충을 해소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함(안 제9조제1항제1호).
- 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대상 상담 및 조사 연구(안 제9조제1항제2호).

다.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안 제9조제1항제3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필요한 조치를 할”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
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조사, 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시장 및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u>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③ (생략)</p>	<p>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 ----- ----- <u>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u> ----- -----.</p> <p>1. <u>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지원</u></p> <p>2. <u>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조사, 연구</u></p> <p>3. <u>그 밖에 시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②·③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처우개선비 지원기준 및 사업규모, 조사·연구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